

#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3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7. 4. 24  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사유

“여권접수 지방분소” 승인확정(2007.2.23)에 따른 여권업무 신설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가. 과 명칭 변경(안 제5조제1항)

○ 민원봉사과 → 민원여권과

나. 총무국에 여권업무 신규 분장(안 제5조제2항제15호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.

라. 입법예고 : 2007. 3. 28 ~ 4. 17(20일간) ▷ 제출된 의견 없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##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민원봉사과” 를 “민원여권과” 로 하고, 같은 조제2항제15호 중 “호적” 을 “여권, 호적” 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총무국에 두는 과) ① 총무국에 총무과, 재무과 세무과, 문화공보과, <u>민원봉사과</u>를 둔다.</p> <p>② 총무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4. (생략)</p> <p>15. 민원행정, <u>호적</u>, 문서,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16. (생략)</p>	<p>제5조(총무국에 두는 과) ① ----- -----</p> <p><u>민원여권과</u> -----</p> <p>② ----- -----</p> <p>1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15. ----- <u>여권, 호적</u>, ----- -----</p> <p>16. (현행과 같음)</p>